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조홍용

전화 055-239-4327

보도자료  
2024. 10. 18.(금)

제 목

# 태국 파타야 드림통 살인 사건 수사결과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림통에 담아 파타야 소재 저수지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을 **금일(10. 18.) 구속 기소**하는 등 3명의 피고인을 모두 기소하였습니다.  
※ 공범 A○○는 8. 2., 공범 C○○는 6. 7. 각 구속 기소
-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면밀히 협력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공범 신병 확보를 위해 신속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들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태국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사법공조요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한편 검찰은 사건 발생 후, 사건관계인들 계좌 추적,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뒤 **피해자를 납치하여 살해**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두 자르고 시신을 드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하는 시체은닉·손괴 범행을 한 뒤,
  - A○○, B○○가 **사망한 피해자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금원 갈취**를 시도한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강력사범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1

## 사건관계인

- **피고인** : A○○(남, 27세, 캄보디아에서 검거, 8. 2. 구속 기소)  
B○○(남, 39세, 베트남에서 검거, 10. 18. 구속 기소)  
C○○(남, 25세, 정읍에서 검거, 6. 7. 구속 기소)
- **피해자** : D○○(남, 34세)

# 2

## 공소사실 요지

- **A○○, B○○, C○○의 공동범행**
  - '24. 5. 3. 태국 방콕 소재 클럽에서 금품 강취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사망케 하여 [강도살인]
  -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시체를 차에 실은 뒤,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하여 [시체은닉]
    - ※ C○○은 시체를 차에 실는 행위까지 하였고 이후는 가담하지 않음
- **A○○, B○○의 공동범행**
  - '24. 5. 3. 강도살인 범행 후 피해자 손가락에 피고인들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하여 철근 절단기로 피해자 시체의 손가락 10개를 절단하여 [시체손괴]
  - '24. 5. 7.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계좌에서 임의로 370만 원을 이체받아 [컴퓨터등사용사기]
  - '24. 5. 7.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가족이 돈을 송금하지 않아 [공갈미수]

### 3

## 수사 경과

● '24. 5. 11. 태국 파타야, 피해자 시신 발견

● '24. 5. 12. 경남도경, 국내 체류 중인 C○○ 긴급체포

● '24. 5. 14. A○○, 캄보디아에서 검거

● '24. 6. 7. 창원지검, C○○ 구속 기소

※ 미검거 공범들 송환을 위한 범죄인인도청구, 태국 현지 수사기록 확보 위한 형사사법공조요청, 사건관계인들 소환 조사, 사건관계인들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 진행

● '24. 7. 10. A○○ 국내 송환

● '24. 8. 2. 창원지검, A○○ 구속 기소

※ C○○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위치정보 등 전자정보 분석, 일부 확보한 태국 현지 수사기록 분석, 유족 등 사건관계인 조사 등 보완수사 진행

● '24. 9. 12. B○○, 베트남에서 검거

● '24. 9. 24. B○○ 국내 송환

● '24. 10. 18. 창원지검, B○○ 구속 기소

※ 대검 통합심리분석(임상평가, 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등) 실시, 법리 검토 등 보완수사 진행

### 4

## 수사결과

### ① 범행 동기 명확히 규명

●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건관계인들의 진술과 계좌 추적,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의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함

-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것임

## ② 구체적인 범행 방법 특징

- 범행 대상을 물색한 A○○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인하는 역할, C○○는 유인한 피해자를 묶는 등 제압하는 역할, B○○는 미리 준비한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분담함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혈액순환계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함
- 피해자 사망 후 피고인들은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피해자의 시체를 옮긴 뒤, A○○과 B○○가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 시체의 손가락을 잘라 손괴한 다음 시체를 차량에 옮겨 신고 저수지로 이동하여 시체를 은닉
- A○○과 B○○는 추가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강취한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계좌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전화하여 공갈을 시도함

## 5 향후 계획

-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사범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국민 안전에 앞장서겠습니다☑